

<p>제2021-213호 2021년 11월 12일(금)</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1-493호 도로지정공고(돌산읍 평사리 34-1) 3
- 여수시 고시 제2021-494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4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1-3006호 도로지정 공고(현천리 465번지) 6
- 여수시 공고 제2021-3008호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 여수시 공고 제2021-3015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42
- 여수시 공고 제2021-3021호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43
- 여수시 공고 제2021-3027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급신청 사실 통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82

기 타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32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57	6	525m ²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돌산읍 평사리	34-1	현황도면 참조	현황도면 참조	43m ²	“	
“	34-3	“	“	482m ²		
이하빈칸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2.

여 수 시 장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12.

여 수 시 장

○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주시 만성로 294 (만흥동)		20211112	20091013	만성리 해수욕장으로 가는 도로	건물 철거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주시 만성로 298-1 (만흥동)		20211112	20091013	만성리 해수욕장으로 가는 도로	건물 철거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주시 만성로 298-2 (만흥동)		20211112	20091013	만성리 해수욕장으로 가는 도로	건물 철거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주시 만성로 298-3 (만흥동)		20211112	20091013	만성리 해수욕장으로 가는 도로	건물 철거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만흥동 1226	전라남도 여주시 만성로 294 (만흥동)	20211112	20091013	만성리 해수욕장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주시 도원로 281 (학동)		20211112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 도원마을을 반영	건물 철거	하이마트 여천점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학동 67-9, 67-12	전라남도 여주시 도원로 281 (학동)	20211112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 도원마을을 반영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주시 이순신광장로 132 (중앙동)		20211112	201110630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 철거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중앙동 273, 272	전라남도 여주시 이순신광장로 132 (중앙동)	20211112	201110630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들산읍 우두리 1006-4	전라남도 여주시 들산읍 강남4길 10-1	20211112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대포리 1529-4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완월당길 25-1	20211112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사곡리 32-3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사곡로 76	20211112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미평동 681-14	전라남도 여주시 미평3길 28 (미평동)	20211112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웅천동 1779-5	전라남도 여주시 웅천2길 5-74 (웅천동)	20211112	20140219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웅천 고유명칭 활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남면 심장리 405	전라남도 여주시 남면 미포길 64-4	20211112	20080911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남면 심장리 396	전라남도 여주시 남면 미포길 65-3	20211112	20080911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광무동 891-4	전라남도 여주시 광무북2길 16-1 (광무동)	20211112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소호동 1181-2	전라남도 여주시 소호로 360 (소호동)	20211112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화양면 안포리 산175-3	전라남도 여주시 화양면 화양로 890-38	20211112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 화양면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덕양리 754-1	전라남도 여주시 소라면 성재길 32-4	20211112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465번지 건축신고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계				62		
소라면	현천리 465	-	-	62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2.

여 수 시 장

공 고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 수립’ 결과 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각종 인·허가 운영 및 공공사업 추진 시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등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수립

1) 도시성장에 맞는 현실적 경사도 기준 마련(안 제12조)

- 부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적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 정책 필요성 제기
- “경사도 22도 미만” → “경사도 22도(녹지지역 20도)미만. 단, 경사도 25도 이상지역은 20% 미만” 으로 변경

2) 표고 완화 산정 시 도로의 기준 명확화(안 별표 23)

- 표고 100m 이상 지역의 개발억제 대책 필요성 제기 및 도로의 기준에 대한 해석상 논란 발생
 - “차량교행이 가능한 5m 이상의 2차로 도로” → “개설이 완료된 차량교행이 가능한 5m 이상의 왕복 2차로 포장도로” 로 변경
 - 법정도로와 공공용도로의 인정 기준 설정
- 3) 절토·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마련(안 별표 24)
- 과도한 옹벽 및 경사지 설치로 경관저해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
 - 비탈면 및 옹벽 높이를 3m 이하로 제한하고 소단 설치, 옹벽간 이격거리를 3m 이상 유지
- 4) 녹지지역 내 생태기준 지표 마련(안 별표 25)
- 녹지지역에 대한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개발행위허가 기준 필요성 제기
 - 자연순환기능을 내포한 친환경계획이 수립되도록 생태면적률 기준 신설
- 5) 상·하수 미설치지역 건축제한 완화규정 강화(안 제14조)
- 대규모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 오·폐수 및 지하수 오염 문제 발생
 - 당초 상수도 미설치 지역의 경우 지하수 설치시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분양 및 임대 목적의 주택사업은 제외하도록 추가
 - 하수도 미설치지역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추가
- 6) 경관지구내 지하 건축물 층수 산입 등(안 제25조)
- 해안변 과도한 지하층 개발에 따른 환경·경관 문제 제기
 - “3층 이하” → 지하층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분류하여 총 3개 층 이하로 변경하고, 건축물 정면부 길이 제한을 장변 길이로 변경하여 전체적인 건축물 규모로 제한

- 「건축법」에 따른 완화 적용되던 조문을 삭제하여 부지 내 일정 면적의 조경을 확보하도록 변경

7)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 변경(안 별표 7~9)

- 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주거복합건축물 입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일조·조망권 문제 발생
- 주거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준주택은 주거 외 비율에서 제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안 제10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요건 시설의 범위를 조례로 정함
-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등 13개 시설 적용

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의 범위(안 제10조의2)

-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의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미적용
-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3년 이내로 적용

3)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안 제21조)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세부 건축물의 용도를 법에서 정하도록 개정되어 삭제

4)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할 경우 건폐율 적용(안 제33조)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할 경우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건폐율 30% 이하로 적용

5) 용어변경에 따른 조항, 조문 개정(안 제13조, 안 제35조, 안 제36조)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항 삭제, 신설, 조문 변경

6) 기타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 안 별표3~10, 안 별표15, 안 별표18, 안 별표20)

다. 각종 인·허가 운영 및 공공사업 추진 시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등

1) 발전시설 등의 이격거리 적용 기준 명확화(안 제12조의2)

- 발전시설 및 야적장, 고물상의 이격거리에 대한 도로기준 명확화

-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 → “개설이 완료된 차량교행이 가능한 5m 이상의 왕복 2차로 포장도로” 로 변경
- 2)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 규정 완화(안 제12조의3)
- 도로 이격거리 제한으로 공장용지 내 자가발전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규제완화 필요
 -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 시설은 이격거리 제한 제외
- 3) 경관지구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허용(안 제24조)
-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해안변 인접지역 설치 불가피
 - 경관지구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 4) 위원회 반복심의 제한 횟수 완화(안 제40조, 안 제40조의2)
- 안건 심의 횟수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의 범위내에서 확대 규제 완화
 - 동일안건에 대한 심의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확대 적용
- 5) 경과조치 반영(안 부칙)
- 본 조례 시행 이전 각종 인·허가와 심의 진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경우 경과조치 적용

3. 일부 개정 조례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21.11.12. ~ 12. 2.(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1)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청사)

2) 전 화 : 061) 659-4011, 팩스 : 659-5833

3) 이메일 : mjh4025@korea.kr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영 제22조제5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를 “법 제28조제4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 이내를 말한다.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토지형질변경 : 22도(녹지지역은 20도를 말한다).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은 해당 지역의 20퍼센트 미만인 범위에서 가능하다.

4. 절토·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 별표 24

5.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및 산정표 : 각각 별표 25 및 별지제1호서식

제12조의2제1호가목 중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별표 23 제2호나목1)의 (1) 내지 (4)의 도로를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가 소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에 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를 “영 제70조의12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를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를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 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청지에 상수도 설치가 불가할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 다만, 분양 및 임대목적의 주택사업은 제외한다.
5. 신청지에 하수도 설치가 불가할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설치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호하목 및 같은 조 제2호거목 중 “시설”을 각각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차목 중 “시설”를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층수는”을 “층수 등은”으로 하고, 제1호에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정면부”를 “장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1. 지하층이 없는 경우 : 3층 이하(12미터 이하)
2.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층수 등
 - 가. 지하층이 1개 층인 경우 : 2층 이하
 - 나. 지하층이 2개 층인 경우 : 1층 이하
 - 다. 지하층이 3개 층인 경우 : 층수 없음
3. 제2호의 지하층은 총 3개 층 이하로 하고 그 건축물의 높이와 지하층 깊이의 합은 총 12미터 이하일 것

제3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35조의 제목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5항”을 “법 75조의3제2항”으로,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의 건폐율은”을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생산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9호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5항을 단서를 삭제한다.

⑤ 개발분과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는 3회로 한정한다.

별표 3 제4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제10호 다목 및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제9호 다목 및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제9호다목 및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중 “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7 제1호 중 “90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를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떨어져 있는 대지에”를 각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로 하며, 같은 호 제3호 중 “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떨어져 있는 대지에”를 각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로 하고, 같은 호 제3호 중 “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별표 9 제1호 및 제2호, 제3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 제4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떨어져 있는 대지에”를 각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로 하고, 같은 호 제3호 중 “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

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별표 10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떨어져 있는 대지에”를 각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로 하고, 같은 호 제3호 중 “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5 제8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며, 제8호 다목 및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8 제9호 다목 및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 중 “시설(동호 아목·자목·너목·더목 및 러목(안마시설소만 해당한다)를 제외한다)”를 “시설[동호 아목·자목·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더목 및 러목(안마시설소만 해당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3 제2호 가.2)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호 나목 1) 중 “차량 교행이 가능한 5m 이상의 2차로 도로”를 “개설이 완료된 차량 교행이 가능한 5m 이상의 왕복 2차로 포장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내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 4) 공공용도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도로

별표 24·별표 25·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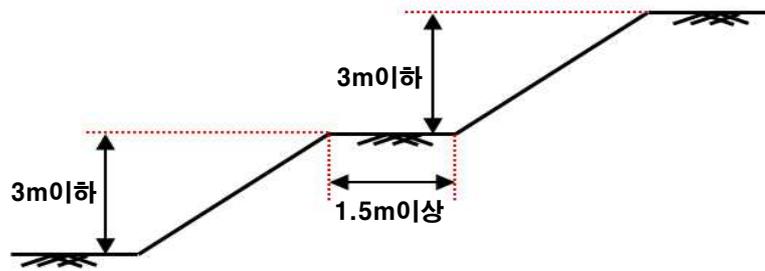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한 경우와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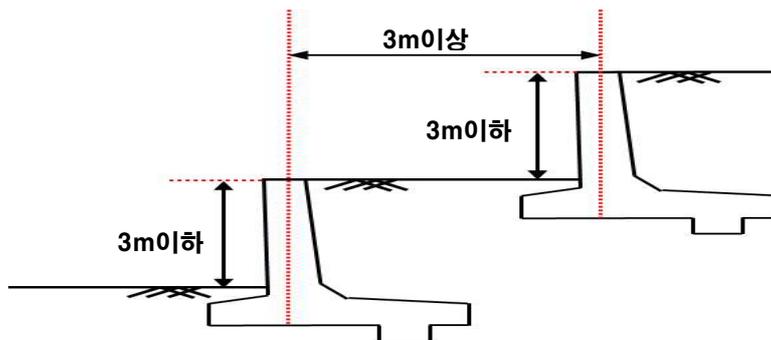
절토·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1. 절토·성토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 3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폭 1.5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며, 총 비탈면 수직높이는 6미터 이하로 한다.



<비탈면 설치기준 예시>

2. 절토·성토 옹벽의 경우 한 단의 높이는 3미터 이하(지표면으로부터 노출된 옹벽 바닥으로부터 높이)로 하며 옹벽 간 수평거리는 3미터 이상 이격하고 2단 이하로 제한한다.



<옹벽 설치기준 예시>

<별지 2>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1. 생태면적률의 산정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전체대상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나. 자연의 순환기능이란 토양기능, 미기후 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 기능, 물순환 기능, 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기능과 토양이 함유한 수분의 증발산 기능과 우수의 투수 및 저장능력으로 일정 지역의 기후상태를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건전한 생태환경을 제공하여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해물질의 여과, 완충, 변환 등을 통하여 물질 순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총체적 기능을 말한다.

2.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 행위허가 대상에 한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생태면적률을 적용한다.

가. 적용지역 : 녹지지역 내 시설 및 건축물

나. 적용비율 : 50퍼센트 이상

다. 제외용도 : 공장, 축사, 세차장, 폐차장, 정비공장, 창고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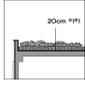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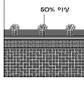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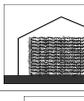
3.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가. 생태면적률 계산은 아래 계산식에 따른다.

$$\text{생태면적률(\%)} = \frac{\text{자연순환기능 면적}}{\text{전체면적}} \times 100 = \frac{\sum(\text{피복유형별 환산면적}) + \sum(\text{식재유형별 환산면적})}{\text{전체면적}} \times 100$$

나. 생태면적률 계산을 위한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피복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물상과 동물상의 개발 잠재력 보유	자연 상태의 지반을 가진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자연지반 기초 위에 조성되고, 투수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투수기능을 가지는 생태연못 등
			바닥에 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공간의 경우 가중치 0.5	
3	 인공지반녹지 ≥ 90cm	0.7	토심이 90cm이상인 인공지반 상부녹지	지하주차장 상부, 지하실 상부 녹지
			토심이 90cm미만인 경우 가중치 0.5(단, 최소토심 40cm 이상)	

피복 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4		옥상녹화 ≥ 40cm	0.6	토심이 40cm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토심이 40cm미만인 경우 가중치 0.4(단, 최소토심 20cm 이상)		
5		투수포장	0.4	자연지반 위에 조성되고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 식물생장 필수	잔디블록, 목판 또는 판석 부분포장
			포장재의 투수율은 0.01cm/sec를 확보 미식재 면적이 50%이상인 경우 가중치 0.2 불투수포장은 가중치 0.0		
6		벽면녹화	창이 없는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단, 최소토심 20cm 이상)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7		침투시설 연계면	0.1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일시적 저류시설과 연계된 면	녹화가 되어 있지 않은 옥상 중 침투시설과 연계된 공간

식재유형	개체당 환산면적	가중치	설 명	대표수종	
8	 0.3m≤수고 <1.5m	0.1m ² /주수	0.1	수고 0.3m이상 1.5m미만인 관목, 지피초화의 경우 산정제외	철쭉류, 개나리, 영산홍
				수고 1.5m이상 4m미만인 대관목 및 소교목	관목 : 산수유, 에기동백 교목 : 무궁화, 라일락
	 1.5m≤수고 <4m	0.3m ² /주수	0.1	관목일 경우 환산면적 0.15m ² 적용	
				수고 4m이상인 대교목	소나무, 향나무, 잣나무, 주목, 느티나무, 청단풍, 메타세쿼이아, 은행나무
				낙엽교목으로 B>12cm or R>15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2m 인 경우 2주 인정	
				낙엽교목으로 B>18cm or R>20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3m 인 경우 4주 인정	
 4m≤수고	3m ² /주수	0.1	낙엽교목으로 B>25cm or R>30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5m 인 경우 8주 인정		

(B : 흉고직경, R : 근원직경, W : 수관폭)

※ 인공지반에 설치되는 수공간, 투수포장의 경우는 인공지반 가중치(0.7 또는 0.5)를 해당 공간유형별 가중치에 곱하여 산정함.

※ 해당 수고의 대나무를 식재할 경우 환산면적의 10퍼센트만 인정

※ 식재유형 생태면적률은 피복유형 생태면적률의 20퍼센트 까지만 인정

<별지 3>

생태면적률 산정표					
□ 대상시설물 개요					
사업명(대상지)					
대상 토지	대지면적(m ²)		용적률(%)		자연지반율
	건축면적(m ²)		건폐율(%)		
□ 생태면적을 산출					
피복유형		가중치	실면적(m ²)	환산면적(m ²)	비 고
1	자연지반녹지	1.00			
2	수공간	투수가능	1.00		자연지반
		차수	0.50		
3	인공지반녹지	토심 90cm이상	0.70		
		토심 90cm미만	0.50		
4	옥상녹화	토심 40cm이상	0.60		
		토심 40cm미만	0.40		
5	투수포장	식재포함	0.40		자연지반
			0.28		인공지반(≥90)
			0.20		인공지반(<90)
		식재미포함	0.20		자연지반
			0.14		인공지반(≥90)
			0.10		인공지반(<90)
6	벽면녹화	0.30			
7	옥상저류/침투시설연계면	0.10			
식재유형		개 체 당 환산면적	가중치	환산면적(m ²)	비 고
8	0.3m≤수고<1.5m	0.1m ² /주수	0.10		
	1.5m≤수고<4.0m	0.3m ² /주수	0.10		
	4.0m≤수고	3m ² /주수	0.10		
합 계					
생태면적률(%)		환산면적/대지면적 × 100 = %			
비고					
1. 자연지반율이란 생태면적 중 자연지반(자연지반녹지, 침투수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생태면적도는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이 구분되도록 작성한다.(인공지반 지하공간선 표시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재공고·열람사항) <u>영 제22조 제5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u>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p> <p>제10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신 설></p> <p>①·② (생략)</p> <p><신 설></p> <p>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거지역, 상업</p>	<p>제6조(재공고·열람사항) <u>법 제28조 제4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u> ----- -----.</p> <p>제10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u>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u>이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p> <p>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p> <p>제1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u>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준치기간 “이란 3년 이내를 말한다.</u></p> <p>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p>

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 2. (생략)

3. 토지의 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 미만일 것

가. 토지형질변경 : 22도

나. (생략)

<신설>

<신설>

②·③ (생략)

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철도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연적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토지형질변경 : 22도(녹지지역은 20도를 말한다).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은 해당 지역의 20퍼센트 미만인 범위에서 가능하다.

나. (현행과 같음)

4. 절토·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 별표 24

5.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및 산정표 : 각각 별표 25 및 별지제1호서식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

-----.

1. -----

-----.

가. ---(별표 23 제2호나목1)의 (1) 내지 (4)의 도로를 말한다) -----

으로 형성되어 차폐된 지역으로서 도로 가시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주변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다. (생략)

2. 3. (생략)

제12조의3(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예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2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삭제

<신설>

② (생략)

제13조(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생략)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나. 다.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예외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5. 자가 소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에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1. (현행과 같음)

2. -----
----- 성장관리계획 -----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

한다.

1. · 2. (생략)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에서 “그 밖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 3. (생략)

제14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의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 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또는 도시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 3.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

-----.

1. -----

경우-----

-----.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① (생 략)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8)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 사목 및 아목을 말한다.

제2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경관지구별로 규정한 각 목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자연경관지구

가. ~ 파. (생 략)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4. 신청지에 상수도 설치가 불가할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 다만, 분양 및 임대목적의 주택사업은 제외한다.

5. 신청지에 하수도 설치가 불가할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설치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

1. -----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거. (생 략)

2. 특화경관지구

가. ~ 하. (생 략)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너. (생 략)

3. 시가지경관지구

가. ~ 자. (생 략)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 파. (생 략)

제2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②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그 높이를 따로 정한 지역의 경우와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1. 자연경관지구 : 3층 이하(12미터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12미터

다)

거. (현행과 같음)

2. -----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너. (현행과 같음)

3.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카. ~ 파. (현행과 같음)

제2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층수 등은 -----.

1. 지하층이 없는 경우 : 3층 이하(12미터 이하)

2.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이하)

3. 시가지경관지구 : 3층 이하(12미터 이하)

③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제2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은 제외한다)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이하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제33조(용도구역·지역·지구안에서

각 목으로 정하는 층수 등

가. 지하층이 1개 층인 경우 : 2층 이하

나. 지하층이 2개 층인 경우 : 1층 이하

다. 지하층이 3개 층인 경우 : 층수 없음

3. 제2호의 지하층은 총 3개 층 이하로 하고 그 건축물의 높이와 지하층 깊이의 합은 총 12미터 이하일 것

③ -----

----- 장
변 -----

④ -----

----- <단서 삭제>

1. · 2. (현행과 같음)

제33조(용도구역·지역·지구안에서

의 건폐율) ① ~ ⑨ (생 략)

<신 설>

⑩ ~ ⑬ (생 략)

제35조(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제3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 18. (생 략)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로 한다)
20. · 21. (생 략)
- ② ~ ⑩ (생 략)

제40조(분과위원회) ① ~ ④ (생 략)

⑤ 개발분과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 건폐율)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⑪ ~ ⑭ (현행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제35조(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75조의3제2항-----
-----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

-----.

1. (현행과 같음)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제3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

1. ~ 18. (현행과 같음)
19. ----- 성
장관리계획-----

20. · 21. (현행과 같음)
-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40조(분과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라. ~ 바. (생략)

11. ~ 17. (생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11. ~ 17.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2. (생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2. (현행과 같음)

3. -----

----- 고려하여 -----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 8. (생 략)

9.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라. ~ 바. (생 략)

10. ~ 16. (생 략)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2. (생 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물환경보전법」-----

라. 「물환경보전법」-----

라. ~ 바. (현행과 같음)

10. ~ 16. (현행과 같음)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2. (현행과 같음)

3. -----

----- 고려하여 -----

4. ~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9. (생략)

가.·나. (생략)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라. ~ 바. (생략)

10. ~ 16. (생략)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물환경보전법」-----

라. 「물환경보전법」-----

라. ~ 바. (현행과 같음)

10. ~ 16. (현행과 같음)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

외한다]

2. (생 략)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거리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 5. (생 략)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신 설>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가. -----

-----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나. -----

-----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3. -----
--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 5. (현행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

1. (생 략)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거리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신 설>

외한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가. -----

-----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나. -----

-----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3. -----
---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7]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

1. (생략)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거리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생략)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2. (생략)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외한다. 다만, 주거용 외의 용도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가. -----

-----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나. -----

-----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3. -----
---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2. (현행과 같음)

가. -----

-----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거리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생략)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 (생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가.·나. (생략)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나. -----

-----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

3. -----
---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 (현행과 같음)

8. -----

----- 별표 1의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물환경보전법」-----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9.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아목·자목·너목·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9.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물환경보전법」 -----

라. 「물환경보전법」 -----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
-----시설[같은 호 아목·자목·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를 제외한다]

[별표 23] 표고의 산정기준

1. · 2. (생 략)

가. · 나. (생 략)

1) 도로 : 차량 교행이 가능한 5m 이상의 2차로 도로
<단서 신설>

2) (생 략)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23] 표고의 산정기준

1. ·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1) 도로 : 개설이 완료된 차량 교행이 가능한 5m 이상의 왕복 2차로 포장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4) 공공용도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도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별표 24] 절토·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별표 25] 생태 면적률 산정방법

[별지 제1호서식] 생태면적률 산정표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 식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11288	2021-28	패류 양식업 (가두리식)	1.0	화양 안포	2011.12.07. 2021.12.06.	2021.12.07. 2031.12.06.	100	여수시 화정면 백야해안길 **	문**외1 (김**)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1. 11. 12.

여 수 시 장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모집 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관련법 시행규칙 제21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및 제10조,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여 수 시 장

1. 위탁운영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여수시 만성로 173	연면적 398.16㎡ (지상 1층)	사무실, 생활실 4, 거실 2, 다목적실, 조리실 등

2. 위탁운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

3. 위탁사무의 내용

업 무 명	사 업 내 용
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 시설 거주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 시설 거주장애인 보호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그 밖의 시설 거주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4. 신청 자격(아래 항목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장애인복지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복지시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타시설 시설장과 겸직불가

5. 신청제외 대상

- 타 법인 및 단체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법인, 단체의 주 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 법인대표와 임원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 받은 운영체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기관(운영주체)
- ※ 수탁자 선정 후 제외사유 발견 시,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함.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위탁을 취소한다.
- 위탁 범위 :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기준에 준하며,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타 법인·단체의 전입금 및 후원금 등으로 충당해야 함.
- 시설공간은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수탁자는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함.
- 시설의 운영은 공공성·능률성 및 전문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특정계층이나 집단(종교·정치)의 활동을 금함.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과 직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2021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함.
-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법인 선정 후 별도 협약에 의함.
- 수탁자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수탁 신청서의 ‘법인 재정부담 약정서’를 자체부담액으로 확정하고 법인은 매년 약정금액을 출연하여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함.

7. 공고 및 접수

- 공모 기간 : 2021. 11. 12. ~ 11. 19. (7일간)
- 접수 기간 : 2021. 11. 17. ~ 11. 19. (3일간)
 - ※ 접수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로 함
- 접수 장소 : 여수시청 노인장애인과(본관 2층)
-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인터넷 접수는 불가)
 - ※ 근무시간 외 도착 서류 및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서류(여수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 1) 위탁운영 신청서 1부 (붙임 1)
 - 법인설립허가증 1부, 위탁 신청 법인이사회 의결 회의록 1부
 - 2) 법인(단체)현황 (붙임 2)
 - 3) 법인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 (붙임 3)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4) 재산 현황(자산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붙임 4)

- 5) 각서 1부 (붙임 5)
- 6)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1부 (붙임 6)
 - 법인 부담 출연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 7) 시설 위탁운영 신청 이사회 회의록 (붙임 7)
- 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붙임 8)
 - 법인대표, 시설장(내정자), 법인이사·감사 모두 제출
-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 9)
- 10) 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붙임 10)
- 11) 위임장(붙임11) : 법인의 대리인이 위탁신청서류 접수할 경우
- 12) 위탁 선정 심사관련 일체 (붙임12)
- 13) 위탁사업 운영계획서 (붙임13)
- 14) 서약서 (붙임14)

- ※ 1. 제출서류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2. 신청서류는 원본1부, 사본12부로 제본항 총13부(A4 좌편철 책자)
 - 사본 12부는 주민등록 뒷번호 별표 처리
 3. 제출서류 1)~ 14)까지 순서별로 편철 후 증빙자료 순서별 별첨(라벨부착)
 4. 사업계획서 및 요약계획서는 파일 포함 제출
 5. 제본 시 책자에는 목차 및 페이지 기입
 6. 신청서류 작성은 서식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작성
 7. 별도 작성 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 문의 : 여수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61-659-3731, FAX 061-659-5821, 팩스 송부 시 전언 통지 요망)

8. 선정방법 및 심사 발표

- 개최일정 : 신청 기관에 개최일 및 장소 개별 통보
- 내 용 : 수탁응모자 사업 설명 및 사업내용 등 심사
- 선정방법 : 심사지표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사업계획 설명-프리젠테이션) 심사

- 심의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를 수탁법인으로 선정
- 재공고 후 신청접수 결과 단독 신청한 경우에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심의를 실시하며, 심의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70점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재공고

○ 동점 시

- ① 법인의 적격성 ②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실적 ③ 시설장 및 종사자 ④ 사업계획의 전문성 ⑤ 재정 순으로 결정, 그래도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함.

○ 수탁운영 신청법인의 사업계획 등 설명

- 법인 대표자 또는 시설장(내정자)의 사업 설명 및 질의답변
 - ※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 법인 대표자와 시설장(내정자)의 동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자는 대리(위임장 제출) 참석 가능하나, 발표는 시설장(내정자)이 하여야 함.
- 설명시간 : 신청 접수순으로 설명 15분(프리젠테이션 등), 질의응답 15분
- 발표자료 : PPT 출력물은 제본하여 책자와 전산파일 제출
 - ※ 제출일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전 까지(별도 통보)

○ 선정발표 : 여수시청 홈페이지 공고

- 협약체결 :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자는 여수시에서 정한 기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법인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를 수탁법인으로 선정하고 협약 체결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추가제출은 불가함.
다만, 공고 기관의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위탁관련 사전 설명회는 없으며, 신청하는 법인은 모집공고, 관계 법규 및 위탁 시설물의 현장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 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에게 있음.
- 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일정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후에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법규 및 여수시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한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수탁자로 결정 통지 받은 자는 지정 일까지 협약을 체결해야하며, 위탁 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수탁자 선정 후 작성된 위수탁계약서는 공증하며 비용은 수탁자 부담임
- 신청하는 법인은 협약서 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노인장애인과(☎061-659-37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심사기준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 별표2)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 문항(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가. 수탁자의 적격성 (42)	A. 법인의 적격성 (18)	A1. 법인의 유형,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복지시설 수탁의 연계성은?	4	3	2	1	
		A2. 법인의 이사회 구성(외부이사 구성 등)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4	3	2	1	
		A3.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4	3	2	1	* 신생법인 제외
		A4. 최근 5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및 조치 결과는?	4	3	2	1	* 신생법인 제외
		A5. 법인이 시설과 같은 지자체에 속해있는가?	2	-	1	-	
	B. 법인의 사업능력 (24)	B1.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주사무소 마련, 담당직원 등)을 갖추고 있는가?	4	3	2	1	
		B2. 법인의 이사회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4	3	2	1	
		B3.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수와 규모는 적정한가?	4	3	2	1	
		B4. 신청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정도는 ?	4	3	2	1	
		B5. 최근 5년간 법인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익사업의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4	3	2	1	* 신생법인 제외
		B6. 최근 5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은?	4	3	2	1	* 신생법인 제외
나.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8)	C. 시설장 및 종사자 (20)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경력 및 시설운영능력은?	4	3	2	1	
		C2. 종사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계획은 어떠한가?	8	5	2	-	
		C3.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지위보장 계획의 적정성은?	8	5	2	-	
	D. 사업계획의 전문성 (12)	D1. 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구체적이고 적정한가?	6	4	2	-	
		D2.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는?	6	4	2	-	
	E. 재정 (16)	E1. 재정운영을 위한 자부담 확보방안은 어떠한가?	4	3	2	1	
		E2. 운영할 복지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은?	8	5	2	-	
		E3.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은 어떠한가?	4	3	2	1	
	다. 지역사회 공신력 (8)	F. 지역 사회관계 (8)	F1. 사업계획서상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관리계획은 어떠한가?	4	3	2	1
F2. 지역민의 욕구 만족 및 이용을 위한 계획은 어떠한가?			4	3	2	1	
라. 종합 의견 (2)	G. 종합 의견(2)	G1. 심사위원 종합의견	2	-	1	-	
계			100	68	42	15	

※ A4, B5, B6 는 신생법인 미해당 항목으로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88점 만점으로 채점 후 100점 환산

※ 신생법인 산식 = 취득점수 + {신생법인 미해당 점수(제외)×(취득점수/총점수)}=최종점수

11.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1. 위탁 운영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증, 위탁 신청 법인이사회 의결 회의록(사본)	- 서식 1 (별첨)
2. 법인(단체) 현황	- 서식 2 (별첨)
3. 법인 대표자 사용 인감계 - 법인 인감증명서(용도 : 위탁 신청용)	- 서식 3 (별첨)
4. 재산현황 □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 공시지가 확인원 • 건물 : 등기부등본 공통 • 단독주택 : 주택가격 확인원 • 상가 : 재산세 과세증명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동산(금융재산 및 부채내역) : 공문시행일 현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잔액증명서(정기성 예금만 인정) • 부채증명서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평가)사에서 발행한 개인신용정보 보고서 제출) 	- 서식 4 (별첨)
5. 각서	- 서식 5 (별첨)
6.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 법인 부담 출연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 서식 6 (별첨)
7. 시설 위탁운영 신청 이사회 회의록	- 서식 7 (별첨)
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법인대표, 시설장(내정자), 법인이사·감사 모두 제출	- 서식 8 (별첨)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등 모두 제출)	- 서식 9 (별첨)
10. 장애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등 모두 제출)	- 서식 10 (별첨)
11. 위임장 : 법인의 대리인이 위탁신청서류 접수할 경우	- 서식 11 (별첨)
12. 수탁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수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신청의 배경과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적격성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연혁, 운영규정, 이사회회의록 사본, 이사회 구성 관련 근거, 외부추천이사 관련 증빙 서류 등 • 법인의 사업능력 - 법인 운영규정, 법인 산하시설 운영규정, 산하시설 종사 교육관련 증빙자료, 사무실 소유 및 임대 관련서류, 등기부등본, 후원금 내역 등 □ 사업계획 및 시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구성 : 이력서, 소지 자격증사본, 시설장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복리후생계획 등 • 사업계획 : 운영 및 사업 계획서, 조직, 인력배치, 예산서, 비전과 목표, 중장기 계획안, 연도별 실행계획안(위탁5년간) • 재정: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예산서, 이사회 회의록 결의내용 사본, 재정투자 계획, 최근 5년간 법인 재무제표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관계 - 사업계획서, 홍보계획 관련 자료 	- 서식 12 (별첨)
13. 수탁사업 운영계획서 - 운영규정, 이사회 회의록 결의내용(사본), 법인재정부담약정서 등 증명서류	- 서식 13 (별첨)
14. 서약서	- 서식 14 (별첨)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수탁신청서류

○○○○○○○○ 법인

제출자료 목차

제출서류	비고
1. 위탁 운영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증, 위탁 신청 법인이사회 의결 회의록(사본)	- 서식 1 (별첨)
2. 법인(단체) 현황	- 서식 2 (별첨)
3. 법인 대표자 사용 인감계 - 법인 인감증명서(용도 : 위탁 신청용)	- 서식 3 (별첨)
4. 재산현황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 공시지가 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 확인원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input type="checkbox"/> 동산(금융재산 및 부채내역) : 공문시행일 현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잔액증명서(정기성 예금만 인정) • 부채증명서(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평가)사에서 발행한 개인신용정보 보고서 제출) 	- 서식 4 (별첨)
5. 각서	- 서식 5 (별첨)
6.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 법인 부담 출연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 서식 6 (별첨)
7. 시설 위탁운영 신청 이사회 회의록	- 서식 7 (별첨)
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법인대표, 시설장(내정자), 법인이사·감사 모두 제출	- 서식 8 (별첨)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등 모두 제출)	- 서식 9 (별첨)
10. 장애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등 모두 제출)	- 서식 10 (별첨)
11. 위임장 : 법인의 대리인이 위탁신청서류 접수할 경우	- 서식 11 (별첨)
12. 수탁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input type="checkbox"/> 수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신청의 배경과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적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연혁, 운영규정, 이사회회의록 사본, 이사회 구성 관련 근거, 외부추천이사 관련 증빙 서류 등 • 법인의 사업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운영규정, 법인 산하시설 운영규정, 산하시설 종사 교육관련 증빙자료, 사무실 소유 및 임대 관련서류, 등기부등본, 후원금 내역 등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 및 시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구성 : 이력서, 소지 자격증사본, 시설장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복리후생계획 등 • 사업계획 : 운영 및 사업 계획서, 조직, 인력배치, 예산서, 비전과 목표, 중장기 계획안, 연도별 실행계획안(위탁5년간) • 재정: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예산서, 이사회 회의록 결의내용 사본, 재정투자 계획, 최근 5년간 법인 재무제표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홍보계획 관련 자료 	- 서식 12 (별첨)
13. 수탁사업 운영계획서 - 운영규정, 이사회 회의록 결의내용(사본), 법인재정부담약정서 등 증명서류	- 서식 13 (별첨)
14. 서약서	- 서식 14 (별첨)

【서식2】

법인(단체) 현황

1. 명 칭 :
2. 소 재 지 :
3. 설립근거 및 목적 :
4. 대 표 자 :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요 이 력

5. 임 원 현 황

○ 임원 명(이사 , 감사)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임기	소유자격	비 고

첨부서류 : 이사회 구성 관련 근거, 임원 이력서, 소지자격증 사본 등

6.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주 요 연 혁

7. 주 요 사 업 내 용
8. 법인·단체의 기구(도표)

년 월 일

제출 법인·단체 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3】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위 인감은 본 법인·단체의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위탁 운영 수탁기관 지정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인감증명서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4】

재 산 현 황

※ 작성 기준일 : 공고일 전일

□ 법인·단체 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A+B+C)	순 자 산			부채(C)	비고
		계	부동산(A)	동산(B)		
합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 재산 성질별 현황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m^2)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 m^2	총가액 (백만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비고란에는 현 이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건 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m^2)	소유자 (등기부상)	지방세 과표	총가액 (백만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비고란에는 현 이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2. 수익용 기본재산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토 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m^2)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 m^2	총가액 (백만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건 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m^2)	소유자 (등기부상)	총가액 (천원)	연간수입 (백만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은 구체적으로 기재(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3. 기타재산(보통재산)

동산형태	금액(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 고
계			

* 공고일 전일 기준(예산잔액증명서, 유가증권, 공공증서로 첨부)

4. 부채현황 (증빙자료 첨부를 통한 신뢰도 증명 필요)

구분	부채금액(천원)	채권자	상환조건	상환일자
계				

* 첨부서류: 부채증명서

5. 최근 5년간 법인 연간수입액 : 천원

수입내역	금 액	비 고
계		
수익사업		판매, 관리, 생산 등
재산사업		임대료 등
회비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후원금		종교단체 등
해외보조금		사회단체사업 등
기타		

* 연도별 별도 작성

【서식5】

각 서

- 법인·단체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법인(단체)은 이번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수탁법인(단체) 공모 신청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물론 수탁법인(단체) 선정심의 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 법인(단체)으로 선정 될 시 위·수탁 협약체결 등 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법인·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재정부담 약정서

_____은(는)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위탁운영자로 선정 될 경우 보조금 외에 사업비 보충 및 장비·비품구입 등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담 및 지원 할 것을 약속합니다.

○ 법인 자부담 지원방법

(단위: 천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방 법	비 고
합 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 .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 증빙서류 첨부 : 법인 부담 출연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 위탁법인으로 결정 후 본 사항은 협약서에 명시하며,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서식7】

시설 위탁운영 신청 이사회 회의록

【주요 포함내용】

-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단체)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이상이 참석하여 서명날인
※ 서명날인 시 간인 날인
-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자체부담 및 수익재산, 보통재산 중 센터에 출연할 금액을 명시
- 기타 위탁사항에 관하여는 주요내용이 기록되어야 함.

【서식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고지 내용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수시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동의 사항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수 임 자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의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또는 서명)	-
	주소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1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1. 6. 30.>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_____경찰관서의 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서식11】

위 임 장

본인 (위임하는 자)		대리인 (위임 받는 자)	
성 명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주 소	
연 락 처		연 락 처	
위임 내용			
○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위탁관련 신청서류 접수 또는 운영계획 발표			

본인은 위임내용에 대해 위 대리인에게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법인·단체 대표)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12】

수탁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 (별표1)

구 성	내 용
1. 수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수탁자의 적격성]	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4)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수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수탁자의 적격성]	
3. 시설운영 계획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1) 조직구성 (1) 시설장 채용조건(경력 등)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안 3)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지역사회 공신력]	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공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가.

수탁자의 적격성

A. 법인의 적격성

A1. 법인유형·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센터 수탁 연계성

○ 수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

○ 기본현황

법인명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유형	전국법인(), 지역법인()	
			법인종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재단()사단())	
설립 허가일				설립등기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리관청	
설립근거 및 목적	※ 개조식으로 작성				
주요연혁	※ 필요시 별지 작성				
주요사업					
법인시설	※ 직영/수탁시설 구분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연혁, 운영규정(이사회나 운영주체의 의결기관에 의해 채택된 확인자료 포함),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수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기록 사본 등

A2. 법인대표 및 이사회 적합성

○ 이사회 임원현황 : 명 (이사 명, 감사 명)

- 이사현황

기본인적사항						임 기 (최초임면일)	소지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특수관계 여 부 관 계 (○,×)
소속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직위 (직책)	주요 경력			

※ 증빙서류 첨부 : 이사회 구성 관련 근거, 임원 이력서 및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소지자격증 사본, 외부추천이사 관련 증빙 서류 등

- 감사현황

기본인적사항						임 기 (최초임면일)	소지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특수관계 여 부 관 계 (○,×)
소속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직위 (직책)	주요 경력			

※ 증빙서류 첨부 : 임원 이력서 및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소지자격증 사본 등

A3. 법인 회계집행의 적절한 수행(외부회계감사)

○ 공인회계사에 의한 정기적인 회계 감사 실시를 통한 점검 여부

구분	점검 기관	공인회계사명 및 회계법인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 내용	지적 건수 (건)	조치 내용	조치 건수 (건)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 증빙서류 첨부: 법인의 감사보고서 결산서 및 부속 명세서 지적사항 개선처리 관련 공문 등 회계감사 실시 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A4. 최근 5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및 조치 결과 > **신생법인 마해당**

○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현황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설립년도	주소	연락처	비고

○ 법인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도별	점검기간	수감정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구분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지적내용	처분사항						조치내용	이행결과 (%) (이행건수/지적건수)
					행정적				재정적	신분상		
					계	시정	주의	경고				
계			건	건	건	건	건/천원	건				
소계			건	건	건	건	건/천원	건				
2017												
2018												
2019												
2020												
2021												

※ 증빙서류 첨부 :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 결과 공문, 조치결과 등(지도점검 실시 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 산하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도별	점검기간	수감정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구분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지적내용	처분사항						조치내용	이행결과 (%) (이행건수/지적건수)
					행정적				재정적	신분상		
					계	시정	주의	경고				
계			건	건	건	건	건/천원	건				
소계			건	건	건	건	건/천원	건				
2017												
2018												
2019												
2020												
2021												

※ 용어정의 : 행정적처분(시정, 주의, 경고 등), 재정적처분(여입, 보전, 추징, 환불), 신분상처분(주의, 훈계 등)

※ 지적사항을 고의 및 실수로 누락한 경우 "0점" 처리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증빙서류 첨부 :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 결과 공문, 조치결과 등

B. 법인의 사업능력

B1. 법인의 사업능력

○ 조직도

--

※ 증빙서류 첨부 : 법인 운영규정, 법인 산하시설 운영규정, 산하시설 종사 교육 관련 증빙자료

○ 법인 사무실 현황

- 소재지 :
- 면적 :
- 운영형태 :

※ 운영형태 작성방법 - 산하시설 내, 별도시설, 조직, 인력 등

※ 증빙서류 첨부 : 사무실 소유 및 임대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업무 상근인력 현황 : 명

부서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담당업무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	특수관계 부여

※ 수탁시설 담당인력이 있을 시 비고란에 표기

※ 증빙서류 첨부 : 법인 직원대장 및 업무분장표, 직원 급여대장

※ 작성기간 : 2015년 ~ 현재

B2. 최근 5년간 법인의 이사회 활동

년도	개최일	참석인원	참여율	상정안건	사업계획 반영여부	비고

※ 증빙서류 첨부 : 이사회 회의록 등

※ 작성기간 : 2017년 ~ 현재

B3.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총괄)

시설구분	계	직영시설	수탁시설	기타
개소수				

○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단위 : m² , 백만원)

구분	시설종류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건축연면적)	운영기간	사업내용	법인지원금 (연간)	비고
직영								
수탁								

B4. 법인의 사업 수익, 후원금 정도

○ 최근 5년간(2017~현재)

연간 수입액 : 백만원

수입내역	금액	비고
계		
수익사업		판매, 관리, 생산 등
재산사업		임대료 등
회비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후원금		종교단체 등
기타		

※ 연도별 작성

B5. 최근 5년간 법안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익사업의 평가 결과

○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 선정실적 (* 신생법인 제외)

구분	지원사업명	신청시설명	사업내용	주관처	지원금액	비고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 평가 산출

연도별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총수	공모결정 총 금액	공모금액 평균값 (금액/시설수)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 증빙서류 첨부 : 선정 공문 등(지원사업명 순서대로 증빙자료 첨부, 반드시 쪽번호 붙일 것)

※ 산출식 : 공모실적 ÷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 수

※ 사회복지시설 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함

○ 사회복지시설 관련 평가결과(2017~2021)

년도	연번	평가대상 시설명	평가점수(총점)	비고
2017				
2018				
2019				
2020				
2021				

※ 평가결과 첨부(단, 최근 5년 동안 평가결과가 없을 시 평가시점과 가장 가까운 년도의 평가 결과 반영)

B6. 최근 5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

(* 신생법인 제외)

(2017~2021)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연도별	법인전입금 약정	법인전입금	이행율(%)	비고
계					

※ 증빙서류 첨부 : 계좌이체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C. 시설장 및 종사자

C1.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성 및 경력, 추진의지

○ 시설장(내정자) 경력 및 인적사항

임명방법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공개모집 법인임명						

○ 시설장(내정자) 자격증 취득 현황

취득일자	자격증 종류	시행기관	비고

구 분	근무시설명	근무기간	근무경력	연 락 처	증빙자료 페이지수
	계		년 월		
장애인복지시설	소 계				
노인복지시설	소 계				
장애인복지관	소 계				
아동복지시설	소 계				
기타복지시설	소 계				

※ 증빙서류 첨부 : 이력서, 소지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시설장(내정자)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붙임)

○ 시설장(내정자)의 추진의지

-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구체적으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계획서, 시설장(내정자) 자원봉사 실적등

○ 시설장 공개채용 절차 계획서

- 시설장 공개모집 조건
- 인사위원회 구성 방안

※ 증빙서류 첨부 : 시설장 공개 채용 계획서, 시설장 공개채용 인사위원회 구성 내역

C2. 종사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급여 및 복리 후생

-

※ 증빙서류 첨부 : 종사자 인력구성 및 채용계획, 복리후생계획, 연도별 교육 실시 계획서, 인사관리 규정, 인사위원회(수탁시설) 구성 계획,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지급 계획 등

C3.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지위보장

-

※ 증빙서류 첨부 :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지위보장 계획

D. 사업계획의 전문성

-

※ 증빙서류 첨부

- 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사업 계획서
- ② 조직, 인력배치, 종사자 전문성 정도 및 증진 방안
- ③ 예산서
- ④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비전과 목표
- ⑤ 중장기 계획안
- ⑥ 연도별 실행계획안(위탁 5년간)

E. 재정

E1. 자부담 확보방안

○ 법인 자부담 방법

※ 증빙서류 첨부 :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예산서, 이사회 회의록 결의내용 사본

○ 법인의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연간 수입액 : 백만원

수입내역	금액	비고
계		
수익사업		판매, 관리, 생산 등
재산사업		임대료 등
회비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후원금		종교단체 등
기타		

※ 연도별 작성

E2. 재정투자 계획

연도별	총 예산액	자부담액					자부담 비율 (%)	자부담액 확보 방법	비고
		계	법인 전입금	사업 수입	후원금	잡수입			
								※ 자부담액 예산과목별로 작성	

E3.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 재정의 구성 및 관리계획

※ 증빙서류 첨부 : 최근 5년간 법인 재무제표

다.

지역사회공신력

F. 지역사회 관계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과 공유복지 계획

-

- 이용자와 지역주민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적 기반

-

- 지역사회자원개발, 네트워크 형성, 자원봉사 확보 방안 등

-

F2. 지역민의 욕구 만족 및 이용을 위한 계획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계획

-

- 지역주민 욕구조사 계획

-

※ 증빙서류 첨부

- ① 사업계획서
- ②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홍보 계획 관련 자료

수탁(예정)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사업운영계획서(안)

1. 사업명

2.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별지작성 가능)

-
-

3. 조직 및 인원 구성계획

- 시설장 채용조건
- 종사자 확보계획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종사인력 활용 및 역량강화 계획
 - 직원에 대한 업무평가, 보수교육 계획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기관 각종 운영규정

-

※ 운영규정 별첨

4. 사업추진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구체적 작성)

-
-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특성화 계획(구체적 작성)

-
-

(3)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안

- 의무적 및 특성화 프로그램 포함 구체적 작성(사업 지침에 의한 프로그램 수행)
- 프로그램 등 사업계획요약서 별도작성
- 사업내용, 운영방법, 운영프로그램, 부담액 등 구체적 작성
(프로그램 등 사업계획요약서 별도작성)

5. 시설운영 계획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

(3) 재정운영계획

-
-

(4) 재정투자계획

-
-

(5) 재정확충방안

-
-

(6) 자부담 확보계획

(단위 : 천원)

년도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출연금액							

※ 법인부담금 확인서 첨부

- 이사회 회의록 결의내용 사본, 법인재정부담약정서, 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등 증명서류 첨부

(7) 시설 및 장비 관리 계획

-

(8) 세입·세출예산서(2022~2027)

○ 세입예산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산출내역
관	항	목		

○ 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산출내역
관	항	목		

※ 사회복지사업법 및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위탁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 산정

6.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신뢰성 등) 제고 방안
-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 (3)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활용방안
 - 지역사회자원 동원 방안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 방안 등
- (4) 향후 홍보계획의 타당성

7. 기타사항

- 추가 및 미반영 사항 제시
 -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발전방향
 - 지역복지발전방향 등

서 약 서

본 위탁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탁운영체 지정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이에 서약합니다.

1. 본 위탁신청자는 운영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위탁신청자는 위탁운영체로 지정되는 경우 프로그램의 개발, 이에 대한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며, 특히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여수시의 정책적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겠습니다.
3. 본 위탁신청자는 위탁운영체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제안 안내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 위탁신청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감 인)

여 수 시 장 귀하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1. 12.

여 수 시 장

1. 공고내용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붙임 참조)
2. 공고대상 : 84명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1. 11. 12. ~ 11. 26.(15일간)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특별조치법 T/F팀 (T. 061-659-5640~56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공시송달 목록

접수번호	공시송달 대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확인서 발급 신청인		취득사유	공고기간	공시송달 사유	비고	
	이름	생년월일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이름					생년월일
1022	백선우		화정	제도	산48	임야	1983	백선우	임현재	1965.**	매매	21. 11. 4. ~ 22. 1. 4.	제적부호회불가	
1064	곽혜숙	1945.**	남면	두모	산37	임야	9223	안봉중력	한기운	1973.**	매매	21. 11. 4. ~ 22. 1. 4.	주민번호회불가	
	안영신	1958.**											이민출국자	
	안은식	1965.**											현지이주자	
	안은숙	1952.**											이민출국자	
1070	김전례	1912.**	남면	유송	493 496	답	83 109	김유성	김성은	1972.**	증여	21. 11. 4. ~ 22. 1. 4.	생사불명	
	김상례	1922.**											생사불명	
	김점심	1925.**											이민출국자	
	장석심	1935.**											이민출국자	
	김준언	1942.**											생사불명	
	김미경	1964.**											생사불명	
1071	김은덕	1941.**	남면	심장	306	전	582	김보한무	최득심	1932.**	매매	21. 11. 4. ~ 22. 1. 4.	가족관계 및 주민전산 주민번호 상이	
	김대웅	1951.**											국적상실	
	김은숙	1959.**											재외국민출국자	
1075	김일선	1939.**	남면	심장	150	대	241	김근조	김인숙	1964.**	매매	21. 11. 4. ~ 22. 1. 4.	생사불명	
1096	김창조		화정	개도	256-7 252-1	전	734 1250	김창조	김정수	1980.**	증여	21. 11. 4. ~ 22. 1. 4.	제적부호회불가	
1120	박철	1969.**	삼산	초도	산2450	대	198	박산암	박충복	1964.**	매매	21. 11. 4. ~ 22. 1. 4.	이민출국자	
1122	김애란	1961.**	남면	우학	435-1	전	1471	김창석	김종열	1968.**	증여	21. 11. 4. ~ 22. 1. 4.	주민번호회불가	
1141	박복명	1937.**	화정	개도	648	임야	889	정성곤	김연문	1956.**	매매	21. 11. 4. ~ 22. 1. 4.	가족관계 및 주민전산 주민번호 상이	
	정준영	1944.**											1970년 국적결혼	
	정은화	1956.**											이민출국자	
	정희석	1961.**											2007년 국적상실	
1144	김향균	1963.**	화정	개도	산378	임야	1388	김글름	임정의	1941.**	매매	21. 11. 4. ~ 22. 1. 4.	현지이주자	
1147	박옥희	1971.**	화정	제도	282-1	도로	30	임형웅	배인찬	1948.**	매매	21. 11. 4. ~ 22. 1. 4.	거주불명자	
1148	박옥희	1971.**	화정	제도	282-4	도로	79	임형권	배인찬	1948.**	매매	21. 11. 4. ~ 22. 1. 4.	거주불명자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공시송달 목록

접수번호	공시송달 대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소유자	확인서 발급 신청인		취득사유	공고기간	공시송달 사유	비고	
	이름	생년월일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이름					생년월일
1151	이수정	1951.**	화정	제도	283-4	학교 용지	23	임정섭	추순봉	1950.**	매매	21. 11. 4. ~ 22. 1. 4.	국적상실	
	임송미	1972.**											현지이주자	
1179	정연숙	1957.**	화정	개도	산608-5	도로	132	정봉곤	정임승	1978.**	상속	21. 11. 4. ~ 22. 1. 4.	거주불명자	
1191	손경자	1968.**	남면	우학	산4-3	임야	1983	김복용	김영전	1955.**	상속	21. 11. 4. ~ 22. 1. 4.	주민번호회불가	
	김경호	1980.**											주민번호회불가	
1194	이경자	1961.**	남면	유송	1092	전	251	김우암	김경한	1969.**	매매	21. 11. 4. ~ 22. 1. 4.	주민번호회불가	
	이희숙	1961.**											이민출국자	
1200	활양진	1899.**	남면	유송	306	전	139	황재석	김주송	1938.**	증여	21. 11. 4. ~ 22. 1. 4.	주민번호회불가	
	이도록	1917.**											주민번호회불가	
	이경희	1951.**											주민번호회불가	
1211	박장남	1965.**	삼산	손족	산912 산1631	전 전	793 1644	박이도	박수한	1959.**	증여	21. 11. 4. ~ 22. 1. 4.	거주불명자	
1218	마경란	1964.**	남면	우학	321	전	129	마고실	김경록	1961.**	매매	21. 11. 4. ~ 22. 1. 4.	국적상실	
	유백업	1938.**											직권말소자	
1247	최민업	1935.**	남면	심장	235-3	전	110	최찬홍	이성자	1952.**	매매	21. 11. 4. ~ 22. 1. 4.	생사불명	
1275	임선자	1941.**	화정	제도	230-6	대	426	임원직	김도현	1964.**	매매	21. 11. 4. ~ 22. 1. 4.	주민번호회불가	
1289	김상노	1959.**	화정	개도	1555-4	전	239	김동길	정도현	1993.**	매매	21. 11. 4. ~ 22. 1. 4.	주민번호회불가	
1293	임연매	1927.**	화정	개도	168	답	493	임수봉	정명선	1951.**	매매	21. 11. 4. ~ 22. 1. 4.	가족관계 및 주민전산 주민번호 상이	
	이영희	1952.**											제적추적불가	
1303	김민우	1977.**	삼산	초도	산2235	대	298	박경숙	안옥순	1959.**	매매	21. 11. 4. ~ 22. 1. 4.	가족관계 및 주민전산 주민번호 상이	
1313	박옥희	1971.**	화정	제도	100-1	대	192	임여환	옥진배	1941.**	매매	21. 11. 4. ~ 22. 1. 4.	거주불명자	
1317	김종훈	1982.**	남면	안도	20	답	155	심재원	문경열	1952.**	매매	21. 11. 4. ~ 22. 1. 4.	주민번호회불가	
	김종민	1984.**											주민번호회불가	
1320	박계철	1938.**	남면	두라	396	전	625	윤사범	윤길선	1941.**	매매	21. 11. 4. ~ 22. 1. 4.	회회불가	
1321	김춘자	1958.**	남면	두라	337-10	임야	4139	김만암	김별현	1963.**	증여	21. 11. 4. ~ 22. 1. 4.	제적부상회회불가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공시송달 목록

접수 번호	공시송달 대상		부동산의 표시					대상상 소유자	확인서 발급 신청인		취득사유	공고기간	공시송달 사유	비고
	이름	생년월일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이름	생년월일				
1323	김우웅	1934.**.**	남면	두라	294	임야	833	김관섭	김중수	1963.**.**	상속	21. 11. 4. ~ 22. 1. 4.	현지이주자	
	김화룡	1962.**.**											주민번호조회불가	
	김한심	1949.**.**											국재결혼	
	김정자	1941.**.**											주민번호조회불가	
1324	김우웅	1934.**.**	남면	두라	전44-1	임야	1091(1/2)	김관섭	김중수	1963.**.**	상속	21. 11. 4. ~ 22. 1. 4.	현지이주자	
	김화룡	1962.**.**			산44-5		595(1/2)						주민등록조회불가	
	김한심	1949.**.**			산44-7		595(1/2)						국재결혼	
	김정자	1941.**.**			산44-11		397(1/2)						주민번호조회불가	
1326	박희상	1930.**.**	남면	두라	256-1	대	202	김광선	김중수	1963.**.**	매매	21. 11. 4. ~ 22. 1. 4.	주민번호조회불가	
	박정애	1935.**.**											거주불명자	
	박희민	1946.**.**											주민등록조회불가	
	윤영돈	1950.**.**											주민등록조회불가	
	이승희	1970.**.**											재외국민거주자	
	이태룡	1960.**.**											거주불명자	
	홍광성	1969.**.**											거주불명자	
1327	김우웅	1934.**.**	남면	두라	295	전	254	김관섭	김중수	1963.**.**	상속	21. 11. 4. ~ 22. 1. 4.	현지이주자	
	김화룡	1962.**.**			353		139						주민번호조회불가	
	김한심	1949.**.**			177		126						국재결혼	
	김정자	1941.**.**											주민번호조회불가	
1329	강상선	1907.**.**	남면	철간	40-1	임야	5101	강순삼	강명근	1944.**.**	매매	21. 11. 4. ~ 22. 1. 4.	제적등본조회불가	
	강상욱	1919.**.**											제적등본조회불가	
1334	이두성	1893.**.**	삼산	손죽	산220	전	793	이두룡	송철희	1952.**.**	매매	21. 11. 4. ~ 22. 1. 4.	주민번호조회불가	
	이지심	1899.**.**											주민번호조회불가	
	송강의	1966.**.**											주민번호조회불가	
	김설자	1940.**.**											주민번호조회불가	
	박명민	1956.**.**											주민번호조회불가	
1349	김세환		삼산	동도	919	전	69	김세환	신장오	1954.**.**	매매	21. 11. 4. ~ 22. 1. 4.	제적조회불가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공시송달 목록

접수 번호	공시송달 대상		부동산의 표시					대상상 소유자	확인서 발급 신청인		취득사유	공고기간	공시송달 사유	비고
	이름	생년월일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이름	생년월일				
1358	지영주		화정	철호	산64	임야	3174	지영주	심상윤	1964.**.**	매매	21. 11. 4. ~ 22. 1. 4.	제적조회불가	
1370	남기주	1933.**.**	삼산	서도	684 707	대 전	298 1157	박성국외1	김금자	1926.**.**	매매	21. 11. 4. ~ 22. 1. 4.	말소자	
1383	김연자	1939.**.**	화정	제도	259	대	426	김금동	김수영	1957.**.**	매매	21. 11. 4. ~ 22. 1. 4.	주민번호후적불가	
1393	이민영	1985.**.**	남면	화태	414	묘지	212	이재호	이병관	1971.**.**	상속	21. 11. 4. ~ 22. 1. 4.	이민출국자	
1410	김덕례	1952.**.**	남면	두도	881-15 881-18	전 전	182 331	김항백	김덕룡	1961.**.**	증여	21. 11. 4. ~ 22. 1. 4.	거주불명자	
1612	최은숙	1965.**.**	화정	낭도	1088	임야	2436	최정순	최재성	1923.**.**	상속	21. 11. 4. ~ 22. 1. 4.	말소자	
1613	최은숙	1965.**.**	화정	낭도	산115-2	임야	30843 (1/5)	최상우	최재성	1923.**.**	상속	21. 11. 4. ~ 22. 1. 4.	말소자	
1614	최은숙	1965.**.**	화정	낭도	522-3	전	456 (1/5)	최상우	최재성	1923.**.**	상속	21. 11. 4. ~ 22. 1. 4.	말소자	

이 의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공고기간	만료일
------	------	-----	------	------	-----

부터 2개월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m ²)
-----	-----	----	---------------------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세요.

이의신청 관련 상호 협의를 위한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공개 허용 여부 : 공개 불가

위의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가 확인서 발급신청을 했다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첨 소명서류와 같이 위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임이 명백한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